

비영어권자를 위한 상거래 문서(Transaction Form) 사업자가 통역했을 경우

만일 소비자가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자로서, 문서상의 계약을 초래하는 상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또한 판매상이나 판매업소의 직원이 거래나 협상에 있어 소비자를 위해 통역을 했을 경우 일리노이 소비자 상거래 사기 규제법(Illinois Consumer Fraud and Deceptive, 2001년 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본 문건이 작성되어야만 한다. 본 문건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다뤄져야 한다. 단 그 언어가 문서로 사용할 수 없는 언어일 경우 영어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본 거래 행위, 혹은 협상 내용들은 내 모국어인 한국어로 행해졌다. 나는 내 자유 의사에 의해, 협상하는 동안 판매상의 통역자 역할을 받아들인다. 계약 의무 조항 혹은 기타 문서상의 협약에 따른 의무 조항 등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내게 설명되어졌다. 나는 계약 내용과 기타 문서상의 협약에 대해 이해한다.

소비자 사인

판매상 사인

사업자명

날자

본 문서는 영어를 번역한 것으로 사업자와 별개로 제공된 것이다.
사업자는 번역의 정확 여부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